**제1장 총 칙**

**제1조(목적)**

이 규정은 ESG경영위원회 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ESG와 관련된 관계 법령,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**제3조(직무와 권한)**

1. 위원회는 회사의 환경(E)ㆍ사회(S)ㆍ지배구조(G) 관련 주요이슈 및 전략에 대한 계획과 실적을 심의한다.
2. 반기마다 정기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사로부터 ESG경영 실태를 보고받고 안건을 심의한다.
3. 위원회는 심의내용과 ESG경영 실태를 반기마다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단, 이사회 보고는 본 규정 제11조에서 정하는 간사가 대신할 수 있다.
4. ESG와 관련된 안건이 이사회에 상정되는 경우 임시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안건을 사전 심의한다.
5.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**제2장 구 성**

**제4조(구성 및 임기)**

1. 위원회의 위원(이하 "위원”)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.
2.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사외이사를 위원 총수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.
3. 위원의 임기는 동 위원의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 까지로 한다.
4. 위원이 사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위원장)**

1. 위원회는 제8조에 의한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한다.
2.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.
3.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.
4. 위원장 유고시에는 사외이사 중 위원으로 먼저 선임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 다만, 선임된 일자가 같을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.

**제3장 회 의**

**제6조(회의의 종류)**

1.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.
2. 정기위원회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 개최하며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**제7조(소집)**

1.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2.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3. 위원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회의 일시, 장소, 의안의 내용을 회의일의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4.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절차 없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**제8조(결의방법)**

1. 위원회는 재적위원 3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음성을 송,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회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그 위원은 회의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2. 위원회의 결의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**제9조(부의 및 보고사항)**

1.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  1. ESG 경영을 위한 기본 정책 및 전략 등의 수립
   2. 중장기 ESG경영 목표의 설정
   3.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을 받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2. 위원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  1. ESG 경영 활동에 대한 계획 및 이행 성과
   2. ESG 관련 중대한 리스크 발생 및 대응에 관한 사항
   3.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을 받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10조(의사록)**

1. 위원회는 회의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.
2.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심의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다.

**제4장 보 칙**

**제11조(간사 및 지원조직)**

1. 회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보좌하고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를 선임하고 지원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.
2.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회 사무의 전반을 담당한다.
3. 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 1. 주요 ESG 중장기 목표 및 관리 지표 설정 지원
   2. ESG 평가 대응
   3. ESG 관련 대외 업무
   4. 위원회 소집통지, 부의 안건의 준비 및 배포, 의사록 작성 및 부의 안건의 사후관리
   5. 위원회 사무 전반에 대한 실무적 지원

**제12조(규정의 개정)**

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